

일반대학원 중소기업 계약학과(ICT융복합내진·초고층학과) 박사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 : 2024. 2. 14.

개정 : 2026.0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대학원 학칙 제7조의 2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설치 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재교육형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설치한다.

제3조(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제4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 ① 계약학과의 명칭은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이하 학과)”로 하고 학위명은 “공학박사(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전공)”으로 한다.
- ②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장 입학

제5조(지원자격)

- ① 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가” 목과 “나”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및 최소 의무 근무기간보다 장기간이어야 한다.
 - 가.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 나. 국가법령에 따라 “가” 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위탁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1.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 가. 교육부 계약학과 설립 운영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단, 부동산업, 일반유통주점업, 무도 유통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챔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에 재직 중인 자

- 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는 제외하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입학이 가능하다.)
- ② 위 내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근로자를 신입생 선발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계약학과 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학생의 선발)

- ① 학과의 입학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총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참여학생을 선발하되 관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 대표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또한,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신청기업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전형방법	1. 서류전형 (50%) 2. 면접고사 (50%)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단국대학교 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면접고사의 심사위원은 학과 전임교원과 산업체 추천 인원으로 구성한다.

1. 학과의 경우 입학생 선발 시기는 봄 또는 가을학기에 모집하며, 전형절차는 대학원 학칙에 따르되 전형결과를 15일 이내에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학생선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또는 설치 예정인 기업의 연구요원
 - 나.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라.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마.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병 및 단기복무 간부
 - 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3항에 근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자.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유통기업 “에 재직 중인 자
 - 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주관대학의 장은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창업기업은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학기 · 이수 · 학위

제7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수학점 및 수업연한)

- ① 학과의 박사과정 학점은 대학원 학칙 제23조에 따라 45학점(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 ② 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9조(학위취득과정)

-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학위심사청구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 5명이 하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위 수여) 계약학과 박사과정의 학위 수여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위 수여 요건
박사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5학점 이상 이수 (연구지도 9학점 포함)· 외국어 및 종합학력시험 합격· 논문제출 (45학점 이수 후)

제4장 교육과정 · 수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위탁단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

체 등의 시설(소유 또는 임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수업)

- 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현장학습 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현장 실무를 학기 중 15주의 선택과정으로 운영한다.
 2. 질병, 회사 직무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증빙자료 또는 회사내 표의 직인이 날인된 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야간 또는 주말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주간수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출장 강의 등 탄력적인 수업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및 휴학)

-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방학을 이용한 집중과정은 별도로 계약 주체 간 운영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② 참여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출산·유아·휴직·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병역복무는 부득이한 사장에서 제외)으로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교·강사 배정)

- ① 수업의 담당 교·강사는 내부 전임교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혹은 실무 위주 수업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외래 또는 겸임교수로 위촉하여 일임할 수 있다.
- ② 개설 수업의 성격에 따라 2명 이상의 교·강사를 배정하는 팀티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학과에서는 수업의 대표 강사 1명을 지정하여 강의 횟수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학과 운영 · 관리 등

제16조(공동운영) 학과의 운영은 협력기관인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7조(운영기간) 학과의 운영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운영경비 및 부담)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

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12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1. 등록금은 위탁단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장학금의 적용 범위 및 지급 방법) 학과의 장학금 적용 범위 및 지급은 계약 주체 간 협의 및 당해 계약학과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1. 학과의 장학금은 대응자금 및 학과발전기금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2. 매학기 학년별(학기별) 성적우수자와 강의 활동에 필요한 과목별, 학년별(학기별) 수업조교 및 실험조교에 대하여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화합을 위하여 학과발전기금의 가용범위 내에서 학과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학과운영위원회 설치) 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학과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과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능 : 매 학기 학과운영계획 수립, 소속학생의 학적에 관한 사항 등 학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구성 : 위원장은 해당 계약학과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주관대학, 협력기관, 참여기업, 참여교수, 졸업생 및 참여학생을 대표하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운영 :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과반수 참석 시 개회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 시 의결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전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22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 ①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1.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의 부담은 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및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계약학과 학생이 위탁단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 부담금 등은 운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 소속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별표 1의 기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산학협력지원)

- ① 우수한 학생의 유치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협력기관,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산학협력(세미나, 단기강좌 개설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참여기업에서는 학기별 입학 인원에 따라 ICT융복합내진·초고층공학과에 지정 기부의 형태로 대응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기부금액은 학과의 운영비와 장학금, 대학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6장 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 및 본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1.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교육부의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을 우선 준용한다.

부칙(2024. 3. 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내규는 2024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